P - 55 - 2012

황을 사용하는 공정의 화재 및 폭발 방지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7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O 작성자: 이 헌 창

O 개정자 : 한 우 섭

- O 제 · 개정 경과
  - 2010년 10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  -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 - NFPA 655, "Standard for Prevention of Sulfur Fires and Explosions", 1993 Ed., 1993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12년 7월 18일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P - 55 - 2012

# 황을 사용하는 공정의 화재 및 폭발 방지에 관한 기술지침

## 1. 목적

이 지침은 황을 가공 및 취급하는 공정에서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위험을 경감시킴으로써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고, 공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황의 분쇄, 연마, 미분쇄와 같이 황을 취급하는 공정에 적용한다. 다만, 황의 채굴 또는 수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황 분쇄기 (Machinery for pulverizing sulfur)"라 함은 황을 분쇄하는 설비를 말하며,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.
    - ① 1형 분쇄기: 죠(Jaw)와 롤(Roll) 분쇄기와 같은 저속 1차 미분쇄기
    - ② 2형 분쇄기: 4형 분쇄기를 제외하고, 유효 내부용적이 8200 cm 이하인 디스크, 헴머밀(Hammer mill)과 모든 종류의 미분 연마장치와 같은 고속 1차 미분쇄기
    - ③ 3형 분쇄기 : 2형 분쇄기 분류이나 내부용적이 8200 cm을 초과하는 분쇄기 및 미 분쇄기
    - ④ 4형 분쇄기 : 분쇄작용이 유동부품에 의존하지 않는 마찰식 밀과 같은 분쇄기
  - (나) "미세한 황"이라 함은 1,000 μm 이하의 황을 말하고, "굵은 황"이라 함은 1,000 μm 이상의 황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P - 55 - 2012

## 4. 일반 요구사항

## 4.1 건물 구조 및 설비 배치

#### 4.1.1 연마 및 미분쇄 기계류 수납용 건물구조

- (1) 연마 또는 미분쇄 기계가 있는 구획실 또는 공간은 불연성 구조에 의해 다른 지역과 분리하여야 하며, 분리벽은 폭발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(2) 배관, 샤프트 및 컨베이어가 바닥, 벽 및 천정을 관통할 경우 개구부는 빈틈없이 밀폐하여야 한다.

#### 4.1.2 분쇄 또는 미분쇄 기계류 및 용기의 배치

- (1) 황의 분쇄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분쇄 또는 미분쇄 기계가 있는 구획실 또는 공간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용기에 연마제품을 채우는 작업은 허용할 수 있다.
- (2) 용기는 주입 완료 후 가능한 빨리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고, 분쇄작업 지역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.

#### 4.2 개구부의 방호

- (1) 연마지역의 벽과 개구부는 2시간의 내화등급을 유지하고, 자동으로 폐쇄될 수 있는 방화문으로 방호하여야 한다.
- (2) 복도 또는 계단으로 연결된 개구부는 2시간의 내화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방화문으로 방호하여야 한다.

#### 4.3 벤팅

- (1) 분진폭발의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 건물은 폭발압력을 벤팅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(2) 분진이 쌓일 수 있는 곳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. 다만, 퇴적이 될 수 있는 곳이 발생할

P - 55 - 2012

경우 45도 이상의 각도로 불연재를 사용하여 덮거나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.

- (3) 폭발예방 또는 방지 시설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모든 장치에 설치하여 야 한다.
  - (가) 장치는 예상 폭발압력을 억제하도록 설계
  - (나) 적합하게 설계된 폭발 벤팅 설치
  - (다) 폭발억제설비 설치
  - (라) 불활성 가스 공급

#### 4.4 전기 배선 및 장비

모든 전기 배선과 장비는 분진폭발위험이 있는 구역을 고려하여 폭발위험지역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4.5 불활성 가스

- (1) 1형 분쇄기는 불활성 가스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.
- (2) 2형 분쇄기는 다음 요구사항을 만족하면 불활성 가스의 방호 없이도 작동을 허용할 수 있다.
  - (가) 기계에 직접 연결하는 공급부와 배출부는 별 모양의 공급회전밸브(Star feed rotary valve) 또는 끝날개를 제거한 스크류 컨베이어(Screw conveyor)와 같이 양 압쵸크(Positive choke)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.
  - (나) 쵸크와 모든 기계 사이는 적어도 690 kPa의 초과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  - (다) 운전조건에서 비정상 기능을 탐지하기 위해 작동중 적어도 근무 교대시마다 1회 씩 기계류를 검사하여야 한다.
- (3) 3형 분쇄기는 불활성 가스 시스템의 사용 없이 작동할 수 없으며, 송풍기나 배출설비로 기계에서 분말 황을 제거하는 경우에 불활성 가스 방호는 모든 배관과 집진기까지 확장하여야 한다.
  - (가) 정상작동조건에서 이산화탄소 설비는 12%까지, 질소 설비는 9.3%까지 산소함량

P - 55 - 2012

을 감소하여야 한다.

- (나) 불활성 가스설비에는 불활성 분위기를 연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와 기록을 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다) 불활성 분위기의 산소함량이 4.5항 (3)호의 (가)에서 명시한 최대치를 초과하여 상 승하는 경우에는 미분쇄기를 자동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.
- (4) 4형 분쇄기는 다음 요구사항을 만족하면 불활성 가스의 방호 없이 작동을 허용할 수 있다.
  - (가) 공급부와 공기 배관의 제어를 위해 각 기계에 수동 작동밸브를 설치
  - (나) 작동 중 이상으로 기계내부의 화재 가능성이 있을 때 검사와 청소를 위한 운전 중 단
  - (다) 기계를 개방하기 전에 모든 밸브를 폐쇄

## 4.6 컨베이어 및 집진기

- (1) 컨베이어 또는 분출관(Spout)은 인접 공간으로부터 방화 구획된 분쇄 또는 미분쇄실로 관통할 수 있다. 이때, 초크나 씰은 벽을 통해 화염의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.
- (2) 연마 기계류로 또는 연마 기계류로부터 황을 공급 또는 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컨베이어에는 분진 외함(Housing)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비철 버킷(Bucket) 또는 버킷 운송기에는 철제 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집진설비
  - (가) 집진기가 4.3항 (3)호에 따라 방호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위치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.
    - ① 지붕 위
    - ② 건물의 외부 또는 건물로부터 적당히 떨어진 거리
    - ③ 폭발 벤팅이 설치된 격리실 내부
    - ④ 폭발 벤팅이 설치된 격리건물 내부

P - 55 - 2012

- ⑤ 폭발 벤팅이 설치되고 격리된 옥상
- (나) 집진설비에 사용하는 다기관 닥트는 사용할 수 없다.
- (다) 집진기는 불연성 구조이어야 한다.
- (라) 집진기에서 건물까지 공기는 재순환되어서는 안 된다.

#### 4.7 발화 방지

- (1) 영구자석 또는 자체 청결 전자기 형태의 승인된 자석분리기 또는 승인된 공기 분리 기는 2형, 3형 및 4형 분쇄기의 앞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. 이때, 설치는 황으로부터 모든 철 함유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(2) 모든 기계는 마찰 스파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.
- (3) 미분쇄기가 정지될 경우와 팬이나 송풍기가 정지하는 경우에는 분진공급이 정지되도 록 상호연동 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모든 기계, 컨베이어, 수납함 및 집진기는 완전히 접합 및 접지하여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(5) 분쇄기와 미분쇄기가 있는 공간에서는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은 허용할 수 없다. 다만, 절단, 용접, 열, 수공구 및 동력공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작동을 중지하고, 부근의 황을 제거한 후 불연성 용기 내에 보호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.

## 5. 미세한 황의 대량 취급

#### 5.1 관리

- (1) 분진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비를 설계, 유지 및 작동하여야 하고, 유출된 분진은 건물 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미세한 황이 대량 축적된 곳에서는 진공청소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에 부드러운 빗자루나 스파크가 없는 삽으로 제거하여야 한다.
- (3) 청소는 진공청소장비로 할 수 있으나 고정식 또는 이동식 진공기구는 적절하게 접지

P - 55 - 2012

하여야 한다.

(4) 압축공기로 표면을 불어내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.

#### 5.2 화재 예방 및 진압

- (1) 미세한 황의 분진화재를 진압할 때에는 분무상 노즐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황 분진이 부유되지 않은 밀폐된 용기의 소화약제로 스팀과 불활성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.
- (3) 분진이 부유되기 전에 화재를 진압한 경우에는 황을 충분히 냉각하여 재 발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발화 후 청소를 위해 연마 또는 기타 가공장비를 사용할 때 공급, 방출 및 기타 개구부는 적절한 금속 밸브로 폐쇄하여야 한다.
- (5) 황 화재 진압용으로 최소 2개의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, 모든 호흡장비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고, 항상 작동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.

#### 6. 굵은 황의 대량 취급

- 6.1 개방 또는 반 구획된 공간에서 취급
  - (1) 운반기계는 정전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합 및 접지하여야 한다.
  - (2) 취급지역에서 나화, 흡연 및 성냥은 금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분진발화를 방지하는 사전 주의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보수작업에 절단과 용접을 허용할 수 있다.

#### 6.2 구획공간에서 취급

- (1) 구획공간에서 대량의 황은 분진운 형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.
- (2) 모든 구획실은 불연성이어야 하고, 분진 축적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 다만, 퇴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가파른 경사 각도의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황을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이동 또는 옮기는 경우에는 방진 외함을 설치하고, 환기

P - 55 - 2012

를 통해 공기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(4) 기계의 모든 금속 부분, 케이스, 저장고(Bin) 및 분출관은 정전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합 및 접지하여야 한다.
- (5) 외함과 반(Semi)외함 내에는 정전기 발생 또는 분진의 축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6) 화염, 열, 수공구 및 동력공구를 사용하는 수리작업은 모든 작동을 정지시킨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.
- (7) 장비, 바닥 및 벽을 청소할 경우에는 분진발생 기계를 정지하여야 한다.

## 6.3 화재 예방 및 진압

- (1) 구획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5.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- (2) 대량의 황에는 소량의 미세한 조각이 있으므로, 보다 더 굵고 거친 호스 방수를 사용할 수 있다.
- (3) 보관 더미에서 초기 화재는 저장더미 위의 황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덮어 질식 소화할 수 있다.

## 7. 액체 황의 취급

## 7.1 불안전한 상태의 탐지

- (1) 액체 황의 상부 대기에 있는 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작동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때, 측정기기는 인화성 가스인 황화수소의 폭발하한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.
- (2) 액체 황 용기의 가스 공간에서 인화성 가스농도가 35% 또는 폭발하한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고, 인화성 가스농도가 15% 또는 폭발하한 이하로 내려가 기 전까지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안 된다.

## 7.2 작업 주의사항 및 장치 설계

P - 55 - 2012

- (1) 액체 황 용기의 부근에서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.
- (2) 액체 황 저장탱크의 주입관은 유입되는 황이 탱크의 황 표면 아래에까지 들어가서 황화수소의 방출을 최소화하도록 탱크바닥까지 연장된 구조이어야 한다.
- (3) 뚜껑이 덮인 저장탱크는 황화수소를 자연 벤팅하도록 가열 벤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때, 벤트설비는 황의 용융온도(154 ℃)를 초과하는 온도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(4) 황 배관과 저장탱크는 정전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한다. 액체 황 탱크와 적하 또는 하역되는 탱크차의 접합을 위해 대지 접속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황을 녹이는데 사용되는 피트와 액체저장탱크에서는 가열코일이 노출되지 않게 액위 가 가열코일을 항상 덮을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.

## 7.3 화재 예방 및 진압

- (1) 뚜껑이 덮인 액체 황 탱크에는 스팀 소화설비를 설치하거나 불활성 가스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고정식 불활성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내식성이 있는 파열판(Rupture disc)은 불활성 노즐 위에 설치하여 황이 노즐 내에서 응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개방된 용기에 보관된 액체 황은 미세한 물 분무로 소화할 수 있으나, 고압 호스에 의한 직접 방수는 피하여야 하고, 물의 사용량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.

#### 8. 154 ℃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액체 황 및 황 증기의 취급

- (1) 154 ℃를 초과하는 온도로 밀폐된 용기에서 가열할 때 액체 황과 황 증기에 적용하며, 7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.
- (2) 장치는 작동 중 설비로부터 공기를 차단하고, 증기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빈틈없이 밀폐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(3) 공정설비에는 적절한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때, 파열판은 벤트 배관이나 닥트에 의해 건물 외부 또는 공정설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직접 방출하도록 하여야 하고, 벤트 배관과 닥트는 황 증기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열하여야 한다.

P - 55 - 2012

- (4) 스팀과 같은 불활성 물질의 적절한 공급으로 블랭킷 및 퍼지장치를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
- (5) 모든 건물 또는 외함은 불연성 구조이어야 한다.
- (6) 액체 황을 취급하는 지역에 설치된 모든 전기 배선과 장치는 가스 폭발위험지역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(7) 황이 증발한 후 다시 황 분진으로 응축하는 경우 공정으로부터 분리된 미세 황 입자의 취급은 5항을 따라야 한다.